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보행자 안전시설(불량 블라드) 미 철거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07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자동차 진입억제 말뚝(Bollard)과 관련하여 “5년 내에 불량 블라드를 개량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동안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드에 걸리는 사고 발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14년도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와 관련하여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2,661개의 불량 블라드를 지적하고 조속히 철거 또는 교체를 하라고 처분요구 하였으며, 아울러 동 사항이 전국 다수 시·도의 공통 지적사항으로 파악되어 ○○○○○○실에서는 2015. 1. 22. 전국 시·도지사에게 불량 블라드를 전면 철거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2]에 따라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1)

그런데 광주광역시(○○과)에서는 2014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사항과 불량 불라드를 철거하라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구·군의 이행사항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 업무가 각 구청에서 조치하는 업무라는 판단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불량 불라드 중 일부만 철거 또는 교체하는 등 부진하게 조치함으로써, 감사일 현재(2017. 9. 20.)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5개 구청의 불량 불라드 총 9,214개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표1] 최근 3년간 철거 또는 교체실적

<단위 : 개>

구 분	계	2015	2016	2017	비 고
계	1,785	217	1,007	561	
동 구	364	35	323	6	
서 구	541	117	249	175	
남 구	165	65	100	0	
북 구	118	0	118	0	
광산구	597	0	217	380	

[표2] 부적격 불라드 현황

<2017. 8. 31일 현재>

- 1)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80~100c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로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30cm 전면(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계				일반국도·지방도				시도				면도·이면도로			
	계	화강석	철재	기타	계	화강석	철재	기타	계	화강석	철재	기타	계	화강석	철재	기타
계	9,214	4,078	4,953	183					9,078	3,984	4,914	180	136	94	39	3
동 구	158	60	80	18					81	17	49	15	77	43	31	3

구 분	계				일반국도·지방도				시도				면도·이면도로			
	계	화강석	철재	기타	계	화강석	철재	기타	계	화강석	철재	기타	계	화강석	철재	기타
서 구	336	124	176	36					336	124	176	36				
남 구	624	592	32						624	592	32					
북 구	1,274	1,102	88	84					1,215	1,051	80	84	59	51	8	
광산구	6,822	2,200	4,577	45					6,822	2,200	4,577	45				

※ 부적격 블라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블라드

또한 최근(2014년 이후) 불량 블라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서구청에서는 사고에 대한 배상금(영조물예산)으로 2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시청 앞 4거리 등 인도 곳곳에 장애우(맹인) 등의 보행중 충돌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자블록의 위치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이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등 보행자 안전시설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량 블라드 9,214개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 등 정비하시고, 주민피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구청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위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보행시설물의 구조·설치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